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5. 7 선고 2023가단15354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훈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23.

판 결 선 고 2024. 5. 7.

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6. 12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. 6. 13. 접수 제83719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 심형섭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[1동의 건물의 표시]

서울특별시 중랑구 , , , , , 동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중랑구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제6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2.77㎡

[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]

토지의 표시 :

1.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 118㎡
2.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 118㎡
3.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 134.6㎡
4.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 116.7㎡
5.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 111.4㎡
6.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 108.1㎡

대지권의 종류 : 1, 2, 3, 4, 5, 6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706.8분의 26.450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간 관계

원고는 축산물 유통 및 도,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,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소외 C로부터 2023. 6.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이며, 소외 C()는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이의 영업상 채무를 보증한 자로서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.

2. 피보전 채권의 존재

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이에서는 지속적인 물품 거래관계가 있었는데,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2022. 8. 23.까지 총 42,596,415원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.

이에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및 소외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(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20206,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에 따른 재소절차 진행) 2023. 6. 27.자로 하기 주문에 따른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(갑 제1호증, 갑 제2호증).

(갑 제1호증 일부 발췌)

1. 피고들은 언데하여 원고에게 42,596,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8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(갑 제2호증 일부 발췌)

확정증명원

사 전 :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20206 [전자]물품대금
 원 고 : 주식회사 A
 피 고 :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의 1명

3. 소외 C 등의 사해행위

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(2022가단120206)에 대금지급에 관한 소를 제기한 이래 해당 소송의 피고였던 소외 C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(대표이사 B, 이 사건 피고)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, 이는 원고가 제공한 물품의 미지급 채무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.

원고는 2023. 5. 11.자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20206 사건에서 추가 입금액 등이 반영된 거래처 원장에 근거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, 2023. 5. 23.자로 변론기일이 있었으며, 2023. 5. 24.자로 위 사건의 피고였던 소외 C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 판결선고 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(갑 제3호증).

(갑 제3호증 일부 발췌)

2023.05.11	원고(주)에게 청구취지 및 변경신청서(23.05.11.자)	2023.05.23. 0시 도달
2023.05.23	변론기일(제10회 변론)(제3변론 1회) 10:30	변론종결
2023.05.23	원고(주)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	2023.05.24. 도달
2023.05.23	피고(주)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발송(문서송달)	2023.05.24. 0시 도달
2023.06.27	판결선고기일(제10회 변론)(제3변론 1회) 10:00	판결선고

사정이 이렇게 되자 **채소를 직감한 소외 C**는 **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인 2023. 6. 12.자로 그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**하였습니다(갑 제4호증).

(갑 제4호증 일부 발췌)

구분	소유권이전	발행일자	발행처	소유자
29	소유권이전	2023년6월15일 제53728호	2023년6월12일 제53728호	소유자 [] 경기도 연천군 [], [] []호 거래가액 금280,000,000원

4. 피고 등의 사해의사

소외 C는 2023. 6. 12.자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상태였습니다. 구체적으로, 원고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를 받은 E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소외 C는 2023. 4. 3.자로 이미 의정부지방법원 신용회복지원 상태, 즉,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습니다(갑 제5호증).

(갑 제5호증 일부 발췌)

8. 추심활동내역

C에 대하여 신용조사 한 바, 의정부지방법원 신용회복지원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로 조사됨,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함.

또한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20206 사건의 피고였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(유일한 사내이사)인바(갑 제1호증, 갑 제6호증) 원고가 소외 C에게 확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. 따라서 피고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.

5. 결론

이상 말씀드린 사정을 고려하시어 신속하게 청구위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.

